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0615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 고	A [redacted]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부과한 19,056,370원 및 10,825,2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B 일대 10,812.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지하4층, 지상 29층의 아파트(분양 215세대, 임대 27세대, 장기전세 22세대),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7. 12. 29. 서울시가 매입한 임대주택 27세대 및 장기전세주택 2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체비지에 포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서울특별시의 '시 매입 임대주택의 누락세원 발굴 계획(2018. 1. 19. 서울특별시 세무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상 매매가격 8,643,4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71,592,280원, 지방교육세 14,136,590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위 과세예고에 따라 2018. 3.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103,511,050원(가산세 19,056,370원 포함)을,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103,511,050원(가산세 10,825,2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가산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속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여러 차례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0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 또한 원시취득 등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 ② 원고가 취득하여 서울특별시가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 체비지로 간주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존부나 납부시기를 안내하거나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에 따라 납부고지서(갑 제2, 3호증)를 발급한 것이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0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0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